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본원을 둔다.

제4조(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에 필요한 활동
2. 본회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내외 활동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활동
4. 학문에 관련된 학술회 개최 및 기타행사 활동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명예회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이수자 및 수여자.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명예회원) 본회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고, 임기는 1년이며 다음 해 2월28일 까지로 한다.

1. 원우회장 : 1명
2. 사무총장 : 1명
3. 감 사 : 1명
4. 고 문 : 2명

제10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결원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총장은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4.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한다.
5. 고문은 임원진과 서로 협력한다.

제11조(선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입후보자 공고가 되면 입후보자 등록 후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1) 최고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단독 등록 시 단독 등록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직전 회장 및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다.

####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 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장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5.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및 폐지 안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승인
4. 사업보고 승인
5. 기타,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1. 운영위원회는 원우회장, 사무총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결의사항)

1. 예산안 수립 및 재정의 집행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장 재정

### 제16조(재정)

1. 원우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원우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17조(회계기간) 회계기간은 당해연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 까지로 한다.

### 제18조(예산집행 및 관리)

1. 원우회비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원우회비 인출,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서류는 임원회에서 보관한다.
3. 원우회비 징수 및 인출, 지출에 관한 관리는 대학원 행정지원실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제19조(결산보고) 원우회의 결산보고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7장 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현 임원진(회장,사무총장)과 차기 임원진은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일반대학원 행정실장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1. 원우회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원우회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현 임원진 차기 임원진은 인수인계 사항에 서명한다.

##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2학년도에 한하여 원우회장 입후보 등록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